한국인구학 제27권 제1호(2004년), pp. 31~55
연구논문

수발상황의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
재미한인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비교*

최 해 경**

노인인구의 급증과 기능손상된 노인에 대한 장기적인 보살핌 제공과 관련 가족에 대한 요구 증가로 인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다섯 개의 가상적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재미한인노인과 그 자녀들의 수발상황에서의 잠재적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미국 로스엔젤리스에 살고 있는 한인노인 10명과 며느리를 포함하여 노인들의 자녀 10명으로 구성되었다. 내용분석 결과 수발상황의 잠재적 노인학대 문제에 관한 인식은 가족 내에 상당한 세대차이가 있었으나 원조요청 태도는 유사하였다. Mann-Whitney test로 전체 노인세대와 자녀세대를 집단비교한 결과 노인세대가 잠재적 노인학대 상황을 자녀세대보다 훨씬 덜 학대로 지각하는 경향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원조요청 태도에 있어서는 전체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집단비교에서도 공적 원조를 활용하겠다는 의사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결과에 근거해 노인복지실천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함의를 논의하였다.

핵심단어: 수발상황, 노인학대, 원조요청, 노인세대, 자녀세대

I. 서론

노인인구의 급증은 노화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불가피하게 낳게 되는데 노인학대[1]도 그가운데 하나이다. 노인학대를 야기시키

* 이 연구는 2002년도 충남대학교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노인학대는 단일한 현상이 아니므로 노인학대와 그 유형들은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학대의 내용에 따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치, 경제적 착취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신체적 학대는 신체적 고통과 억압을 가하는 것으로, 정서적 학대는 정신적 고통, 공포, 불안을 야기하는 위협, 폭언, 모욕을 일컫는 것으로, 방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필요한 것들이 부재한 것으로, 경제적 착취는 노인 소유의 재산 혹은 자원을 불법적 혹은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는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수발자 스트레스는 서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그동안 간주되어 왔다.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기능손상된 노인에게 장기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가족수발자의 스트레스가 노인학대의 고위험 요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학대당하기 쉬운 노인들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기능손상된 노인들이며(Kosberg, 1988; Lachs et al., 1997; Nadien, 1995; Ogg & Munn-Giddings, 1993), 기능손상된 노인과 수발자가 함께 살 때 학대의 위험성이 가장 크다(Berman, 1994; Kosberg, 1988; Lachs & Pillemer, 1995; Lachs et al., 1997; Meshefedjian et al., 1998)는 연구결과들에 근거한다. 생스톡(Sengstock, 1991)은 애정이 깃든 가족보호라는 환상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망, 신체적 손상, 정서적 스트레스, 방치 등 노인학대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수발상황에서 수발자가 비합리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노인학대라고 전제한다. 수발자 스트레스가 노인학대의 고위험요소라는 서구사회의 관점은 제도적으로도 반영되어 있는데 미국의 노인학대 관련 법에서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취약한 노인을 주 보호대상으로 전제하고 있다(Bergeron, 2001).

다양한 잠재적 학대상황을 노인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본 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은 신체 및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노인의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손상으로 가족수발자의 부담이 높은 상황에 있어서는 수발에 따르는 불가피한 조치로 간주하여 신체적 구금이나 권리침해조차 노인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최해경, 1993). 허드슨과 그 동료들(Hudson et al., 1999)도 학대에 관한 노인들의 관점이 전문가들의 것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들의 인식은 노인복지 연구자 및 실천전문가의 노인학대 개념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서구사회에서는 1990년대 들어 일련의 연구들이 노인학대가 정책 관련자나 서비스 제공자들에 의해 문제로 제기되는 과정 속에 노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문제로부터 소외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Carp, 2000; Harbison & Morrow, 1998; Kingston & Penhale, 1995; Moon & Williams, 1993). 수발상황에서의 노인학대 문제는 특히 당사자인 노인과 돌보고 있는 가족의 견해가 매우 중요한데 이를 도외시한 학대판정이나 개입방안은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대신 가족갈등의 심화나 가족해체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게 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수발상황의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가족 내의 노인세대와 성인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살펴봄으로써 노인학대의 개념화 및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에 필

요한 기초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은 노인학대에 관한 사회정책 수립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인 나라로 1970년대 후반부터 노인학대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다루어 왔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1) 수발상황의 잠재적인 노인학대에 관한 재미 한인 가족 내의 노인과 성인자녀의 인식이 세대간에 얼마나 일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며, (2) 잠재적인 학대상황에서 원조요청 태도는 세대간에 얼마나 일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3) 전체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를 집단 비교하고자 한다. 수발상황의 잠재적 노인학대에 관한 노부모와 자녀세대의 인식이 노인학대의 개념화에 반영되고 노부모 및 자녀세대의 원조요청 태도가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발과 확대에 감안된다면 수발상황의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클라이언트 중심의 접근과 해결책 모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연구 고찰

많은 선행연구들이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였으나 대부분 노인의 의존성, 수발부담 및 스트레스가 노인학대와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어 수발자 스트레스 이론에 일치하고 있다. 수발자 스트레스 이론은 노인학대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설명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기능손상된 노인에게 장기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일이 수발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가하면서 수발자가 그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발산한다는 것이다. 수발자의 대처기술, 부담에 대한 인식, 수발자 역할의 자발성, 노인의 고립, 지지적 서비스의 부족 등 수발자를 둘러싼 내적, 외적 요소들도 노인학대에 관련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illemer, 1986; Pillemer & Finkelhor, 1988; Korbin, Anetzberger, & Eckert, 1989; Sengstock & Hwalek, 1986). 울프와 필레머 (Wolf & Pillemer, 1989)는 수발자 스트레스 이론이 성인자녀 수발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수발자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발자 스트레스 이론은 수발받는 노인을 학대하지 않는 수발자들이 수발에 따른 스트레스를 똑같이 경험하는데 왜 학대를 하지 않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스트레스의 원천이 수발받는 노인이라고 간주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난하는 데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

필레머와 수터(Pillemer & Suitor, 1992)는 수발요구, 상호작용적 스트레스, 수발자의 특성, 그리고 수발상황 관련 특성에서 위험요소들을 확인하였고, 특히 상호작용적 스트레스가 폭력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요소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노인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을수록, 노인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일수록, 노인이 분열성 행동을 보일수록, 수발자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수발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수록, 수발자가 노인의 배우자인 경우, 그리고 노인과 수발자가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 수발자는 자신이 폭력적으로 될까봐 두려워 하거나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한국의 중년기 기혼남녀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실태와 관련요인을 파악한 이성희 · 한은주(1998)에 의하면 심리적 학대 및 방치 경험이 가장 높았고 노인학대 경험에는 부양스트레스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이(1998)는 노인의 의존성이 노인학대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수발을 도와줄 동거가족수가 적고 노인이 부정적인 행동통제기술을 많이 사용하여 부양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술한 연구들은 연구자 혹은 실천전문가의 노인학대 개념에 근거한 것들로 수발대상 노인을 포함한 노인 당사자들의 인식이나 가족의 인식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들이다. 다양한 잠재적 학대상황이 한국노인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한국노인들은 가족수발자의 수발부담이 높은 상황에 있어서는 수발에 따르는 불가피한 조치로 간주하여 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최해경, 1993). 한국노인들의 원조요청 태도 또한 수발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경우 도움을 청하겠다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을 청하겠다는 노인들은 거의 대부분 사적 원조체계, 특히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연구자 및 실천전문가와 노인들의 관점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노인집단 내에서도 문화적 요소의 영향으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잠재적 학대상황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미국 미네소타 거주 한인여성노인과 흑인여성노인, 백인여성노인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수발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잠재적 학대상황에 대해 한인여성노인들이 유의미하게 덜 민감하거나 더 관대하며 원조요청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나 문화적 요소가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Moon & Williams, 1993). 이 연구에서 미네소타 거주 한인여성노인들은 수발상황에서 노인에게 강제로 약을 먹게 하거나 신경안정제를 사용하는 것,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대에 묶어놓는 행위 등을 대부분 학대로 간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발자가 노인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보호하려는 선의가 있다거나 수발대상인 노인이 비협조적이거나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들이 학대로 보지 않는 이유들이었다. 동 연구에서 한인노인들은 수발상황인 경우 원조요청 태도가 흑인과 백인집단에 비교해 소극적이었으며 원조요청 의사가 있는 경우 사적 원조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미네소타에서의 연구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 호노룰루에서의 필리핀 및 한인여성노인의 노인학대 및 방치에 대한 인식과 원조요청태도는 예상과 달리 미네소타 연구의 백인여성노인의 응답에 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Pablo & Braun, 1997).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호노룰루의 아시아계 소수인종 노인들이 중서부의 소수인종노인보다 문화적으로 적절한 서비스에 더 나은 접근이 가능하며 호노룰루의 아시아계 여성노인들이 미네소타 한인여성보다 문화적 적응 정도가 높은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재미 한인노인, 흑인, 백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관대함,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 제 3자 개입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한인노인 집단은 흑인과 백인집단에 비해 학대에 덜 민감 혹은 더 관대하였고, 학대의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더 있었으며, 노인학대를 신고하는 것에 관해 더 부정적인 태도였고, 학대사건에 가족외부의 사람을 개입시키는 데 더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Moon & Benton, 2000). 한국에서 조사된 결과에서도 노인들의 학대문제에 대한 원조요청 태도는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자녀 및 가족원에 의해 학대가 발생할 때 피해노인의 62.8%가 끝까지 참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식으로 다수의 노인들이 학대에 매우 수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조애저 · 김승권 · 김유경, 1999). 유럽계 미국인, 흑인, 퓨에르토리칸 미국인, 일본계 미국인 노인과 수발자 세대가 노인학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에서 노인학대의 정의와 이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드러났는데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은 수발하는데 필요한 행동들은 노인들이 이를 원치 않을 때조차도 홀대로 간주하지 않았다(Anetzberger, Korbin & Tomita, 1996). 예를 들어 강제로 기저귀를 착용케 한다든지 처방약을 투약한다든지 하는 것을 홀대라고 보기를 꺼려했다. 반면 수발상황이 아닌 상황에서의 공격성은 홀대로 간주하였다. 블레켈리와 모리스(Blakely & Morris, 1992)는 젊은 사람들과 수발자들이 노인학대를 심각한 문제로 더 생각하고 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견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유의표집으로 선정되었다. 전체 연구대상자는 20명으로 노인 10명과 노인들의 성인자녀(아들, 딸, 며느리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는 교회, 양로보건센터, 노인아파트 등을 매개로 접촉되었다. 연구대상자 선정과 관련 중요하게 고려된 두 가지 기준은 가족 중 노인세대와 성인자녀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와 의사표현 능력이 양호한지 여부였다. 연구대상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가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	성별	연령	결혼 상태	학력	연소득($)	건강 상태	동거 여부	이민 년도
A	여	77	사별	고졸	10,000	좋음	비동거	1977
(어머니/아들)	남	50	기혼	대졸	73,000	좋음		1978
B	남	77	기혼	대졸	20,000	좋음	비동거	1970
(아버지/딸)	여	44	기혼	대학원졸	30,000	보통		1983
C	여	71	기혼	전문대졸	25,000	보통	비동거	1992
(시어머니/며느리)	여	46	기혼	대졸	130,000	좋음		1983
D	남	64	기혼	고졸	24,000	보통	비동거	1983
(시아버지/며느리)	여	36	기혼	대졸	100,000	좋음		1977
E	여	72	사별	초졸	없음	나쁨	동거	2000
(어머니/딸)	여	44	미혼	대학원졸	14,400	좋음		1997
F	여	70	기혼	중졸	20,000	보통	비동거	1988
(어머니/딸)	여	39	기혼	대졸	100,000	좋음		1991
G	여	69	사별	초졸	10,000	보통	동거	1995
(어머니/딸)	여	43	기혼	고졸	90,000	보통		1991
H	남	79	기혼	대학원졸	20,000	보통	비동거	1982
(아버지/아들)	남	48	기혼	대졸	50,000	좋음		1981
I	여	80	사별	전문대졸	10,000	좋음	비동거	1982
(어머니/아들)	남	48	기혼	대학원졸	150,000	보통		1981
J	여	73	기혼	고졸	20,000	나쁨	비동거	1989
(시어머니/며느리)	여	34	기혼	대졸	38,000	나쁨		1995

2. 측정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할 5개의 가상적 시나리오[2]를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고 노인학대 문제를 주된 연구영역으로 하는 교수의 감수를 받았다. 이 시나리오들은 노인과 가족수발자간에 갈등과 충돌이 있는 상황으로 자녀 수발자에 의한 정서적 학대(시나리오 1), 자녀 수발자에 의한 신체적 방치와 정서적 학대(시나리오 2), 자녀 수발자에 의한 경제적 착취(시나리오 3), 배우자 수발자에 의한 정서적 학대(시나리오 5), 배우자 수발자에 의한 신체적 학대(시나리오 5)를 잠재적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가상적 시나리오 사용 외에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으로 성, 연령, 교육수준, 연간 소득(배우자 소득 포함), 주거상태, 건강상태, 이민연수 등이 파악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자료수집을 위해 비구조화된 면접표를 사용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모든 면접을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각각의 시나리오를 읽어준 후 연구 참가자에게 시나리오의 내용이 노인을 학대하는 것으로 여기는지, 그리고 노인학대로 생각하는 혹은 생각하지 않는 근거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면접을 진행하였다. 노인학대 여부에 대한 반응과 상관없이 각 시나리오 상황에서의 노인입장이라면 원조를 요청할 것인지 여부와 누구에게 혹은 어떤 원조를 요청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가족 내 노인세대와 자녀세대를 따로 면접하였으며, 면접시간은 연구대상 가족 당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고, 모든 면접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였다.

노인학대 여부의 판단 근거와 원조유형의 선택에 관한 분석은 연구자를 포함한 두 명의 노인복지 전문가들에 의해 내용분석이 이루어졌다. 내용분석은 비구조화된 개방적 상황에서 수집된 자료에 나타나는 응답자의 다양한 관점과 반응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내면적인 의식과 태도를 다루는 연구에 특히 강점이 있는 분석방법이다. 내용분석을 위한 단위 혹은 준거는 단어, 주제, 인물, 문단, 항

2) Pablo & Braun(1997)은 다양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연구의 한 방법으로서 가상적 시나리오 사용을 인정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폭력에 대한 자신의 인식, 감정, 경험을 공개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가상적 시나리오는 노인학대 연구에서 덜 위협적인, 사생활 침범을 하지 않는 기술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목, 개념, 의미 등인데(Weber, 1990), 본 연구는 응답내용을 단어, 개념 혹은 주제에 따라 분류하는 유목화를 시도하였으며 유목화시킨 범주에 대해 부호화 작업을 하였다. 내용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두 명이 각각 부호화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 의견 차이를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 부호화에 있어서 최초의 의견일치도는 95%였으며 5%의 견해 차이는 토론 후 다시 해소되었다.

수발상황에서의 잠재적인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서 각 가족내의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리고 학대여부의 판단 근거와 원조유형의 선택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내용분석과 함께 전체 연구대상 가족의 노인세대 및 자녀세대의 부호화시킨 견해를 빈도분석하고 비모수통계방법인 Mann-Whitney test로 세대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비모수통계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분석사례수가 노인세대와 자녀세대 각 10명으로 모수통계의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Ⅳ. 분석결과

1. 자녀수발자의 잠재적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

시아버지의 의존성이 심해지면서 수발자인 며느리는 전문시설로 옮길 것을 주장하지만 노인이 이를 원치 않자 아들, 며느리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술에 만취된 아들은 아버지에게 함께 죽자고 주정을 하고 며느리는 노인과 거의 말을 안하고 지내는 상황인 시나리오 1과 관련해 50%의 가족이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견해가 일치되었고 나머지 50%는 세대간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 세대간에 견해가 일치된 다섯 가족 중 A, B, D, I 가족은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E 가족만 학대로 보았다. 세대간 차이가 있는 가족 중에 C, F, H 가족의 노인세대는 학대가 아니라고 본 반면 그 자녀들은 학대로 간주해 자녀세대가 오히려 학대에 민감함을 나타냈다. 반면 G와 J 가족은 노인들이 학대로 판단하였고 자녀세대는 학대가 아니라고 보았다.

시나리오 1과 관련된 원조요청 여부는 모든 가족이 원조요청을 하는 것으로 세대간에 일치를 보였다. 또한 90%의 가족들이 현실적 문제해결 방법으로 공적 원조를 선택하겠다는데 세대간의 일치를 보였다. B와 H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8가족이 모두 너싱홈 같은 시설보호를 요청하겠다는 태도로 대부분 가족들이 거

동이 불편한 심한 의존성을 지닌 노인은 전문시설에서의 보호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B와 H 가족의 노인은 요양원 입소를, 자녀는 재가보호서비스 이용을 요청하겠다는 공적 원조 범위 내에서의 차이를 보였다. G 가족은 노인은 요양원 입소를, 자녀는 사적 원조로 가족 및 친척의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견해 차이가 있었다.

시나리오 1과 관련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면 <표 2>에 나타나듯 학대로 인식하는 노인과 자녀세대는 모두 수발자의 부정적 행동에서 그 근거를 말하고 있다. 반면 학대가 아니라고 보는 노인세대와 자녀세대는 시설보호를 비롯한 합리적이고 편리한 대안이 있는데도 가족보호를 고집하는 노인의 행동과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다는 수발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학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3>과 같이 원조요청 태도에 있어서 노인세대는 모두 시설보호를 선택하겠다는 반면 자녀세대는 시설보호외에도 재가보호서비스를 요청하겠다는 견해가 일부 있었고 소수나마 사적 원조 요청도 있었다.

〈표 2〉 잠재적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인식 비교

상위범주	하위범주	구체적 내용	
		노인세대	자녀세대
학대	수발자의 부정적 행동	-같이 죽자고 하고 말안하는 것 -주정하고 말안하는 것 -시아버지 뜻을 안따름(부모소원 무시)	-너싱홈 안간다고 주정하는 것 -주정하고 말안하는 것 -노인이 원치 않는데 강요하고 자기위주 행동을 함 -원치 않는 선택을 강요
비학대	수발대상자의 부정적 행동	-대안이 있는데도 가족수발 고집 -가족보호를 고집하는 것이 부족한 생각임	-좋은 대안이 있는데 노인이 고집 -너싱홈에 가신다고 해서 아버지를 버리는 것이 아닌데 가족보호만 고집 -시설보호가 더 합리적인데 가족보호 고집
	수발자의 긍정적 행동	-그동안 모심	-며느리의 희생과 수고
	수발상황에 따른 불가피성	-이런 정도는 불가피함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가족이 돌보는게 쉽지 않음 -있을 수 있는 일	-불편한 상황일 뿐임 -간병하는 것이 힘듬 -수발에 따른 불가피함

〈표 3〉 잠재적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원조요청 태도 비교

상위범주	하위범주	구체적 내용	
		노인세대	자녀세대
원조요청	공적 원조	-너싱홈	-너싱홈 -재가보호서비스
	사적 원조		-형제나 친구 도움

2. 자녀수발자의 잠재적인 신체적 방치 및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과 원조요청태도

과거에 자신을 학대했던 어머니가 병들자 함께 살면서 병원에 모시고 가고 식사제공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발은 하지만 어머니가 기대하는 충분한 보살핌은 제공하지 않는 딸이 어머니가 불효녀라고 비난을 하면 과거에 자신에게 얼마나 심하게 하였는지 생각 안나느냐고 하는 시나리오 2에서는 30%만 가족 내의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견해가 일치하여 세대간의 생각의 차이가 현저했다. B, F, I 가족이 세대간에 의견이 일치했는데 B 가족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F와 I 가족은 학대로 보았다. C, D, E, J 가족은 노인세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잠재적인 신체적 방치와 정서적 학대에 관대하였으나 자녀세대는 민감하였다. 학대에 관대한 노인세대는 김할머니가 효도를 받을 자격이 없는 부모라는 점을 주목하는 반면 자녀세대는 부모의 과거 행동과 상관없이 현재의 딸의 행동은 학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부 노인들은 부모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해도 자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자녀가 부모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G와 H 가족은 노인세대는 학대로 보았으나 자녀세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였다. A가족의 노인세대는 한편으론 학대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학대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며 판단을 보류한 반면 자녀세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였다.

시나리오 2에 대한 원조요청 태도는 50%의 가족이 세대간에 태도가 일치되었는데 A, C, D, G, I 가족의 노인과 자녀세대는 공적 원조를 요청하겠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A, D 가족은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가 모두 시설보호를 요청하겠다는 반면 C와 G 가족의 노인세대는 시설보호를, 자녀세대는 재가보호서비스를

요청하겠다고 하였고, I 가족은 노인은 재가보호서비스를, 자녀는 상담을 통해 모녀간의 감정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았다. 반면 B와 J 가족은 노인은 원조를 요청하겠다는 견해인 반면 자녀는 각각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거나 딸이 계속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F 가족은 노인세대는 시설보호를 요청하겠다고 한 반면 자녀는 사적 원조인 가족 및 친척의 도움을 청하겠다고 하였다. E와 H 가족의 노인세대는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 자녀세대는 공적 원조를 청하겠다고 하였다.

<표 4>에서 시나리오 2와 관련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견해를 살펴보면 학대로 인식하는 노인과 자녀세대는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고 과거에 대한 앙갚음을 하는듯한 수발자의 부정적 행동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학대가 아니라고 보는 노인세대와 자녀세대는 부모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은 노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도리를 하고 있다는 수발자의 긍정적 행동을 학대로 보지 않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표 5>의 원조요청 태도에 있어서 노인세대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서비스를, 자녀세대는 시설분규와 재가보호서비스 외에 가족상담을 요청하겠다는 견해와 사적 원조를 청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조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노인세대는 관계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절망을 근거로 한 반면 자녀세대는 자녀 혹은 가족의 도리 차원에서 외부 도움없이 해결할 것을 말하였다.

3. 자녀수발자의 잠재적인 경제적 착취에 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

건강이 나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맏아들부부가 명의신탁된 재산처리와 관련해 어머니의 뜻에 반대하는 세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60%의 가족이 세대간에 일치된 견해를 보여 상대적으로 세대간의 인식차이가 적었다. A, G, I 가족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E, H, J 가족은 학대로 일치된 견해를 나타냈다. 세대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족은 40%로 C, D, F 가족의 노인세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반면 자녀세대는 학대로 인식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재정적 착취에 대해 한인노인들이 관대한 것은 큰 아들이 가족상속의 권리를 가지는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재산이전과 관련된다(Moon, Tomita & Jung-Kamei, 2001). 1989년 민법이 아들과 딸의 동등한 재산상속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어도 아들의 가족재산 상속이라는 오랜 관행이 한국가족과 재미한인 가족 모두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B가족은 노인세대는 학대로, 자녀세대는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시나리오 3과 관련된 원조요청 태도를 보면 60%가 세대간 견해가 일치하였는

〈표 4〉 잠재적인 신체적 방치 및 정서적 학대에 대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인식 비교

상위범주	하위범주	구체적 내용	
		노인세대	자녀세대
학대	수발자의 부정적 행동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 것 -부모노릇 못했다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것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지 않음(부모에 대한 보복)	-필요한 신체적 수발을 안해주는 것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데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 것 -과거에 대한 앙금
비학대	수발대상자의 부정적 행동	-간병하는게 힘든데 웬만큼하면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다 -모시고 있는 것만도 고맙게 여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 -과거의 부모행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풀지 못하는 것뿐 -부모가 먼저 죄를 지었으므로 -대안이 있는데 노인이 판단을 잘못하는 것	-전문적 수발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부모 과거 행동의 댓가
	수발자의 긍정적 행동	-모시고 사니까 인간으로서 기본은 하고 있다 -그나마 모시는 것만 해도 딸이 잘 하는 것임	-부모자격이 없어도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다

〈표 5〉 잠재적인 신체적 방치 및 정서적 학대에 대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원조요청 태도 비교

상위범주	하위범주	구체적 내용	
		노인세대	자녀세대
원조요청	공적 원조	-너싱홈 -재가보호서비스	-너싱홈 -재가보호서비스 -전문 가족상담
	사적 원조		-가족이나 친척의 조언
비요청	관계회복 불가능	-과거는 돌이키기 힘들다 -따로 독립해 거주해야 한다	
	자녀의 의무		-가족 내에서 이해노력 -힘든 수발도 아닌데 자녀가 해야 한다

데 G와 H 가족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겠다는 공적 원조 요청을, A, D, F와 I 가족은 가족 내에서의 합의를 추구할 뿐 가족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B, C, J 가족은 노인세대는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권리를 찾겠다는 적극적인 태도인 반면 자녀세대는 가족 내에서 합의를 해야하며 외부도움은 요청하지 않거나 최후수단으로나 법적 조치를 생각할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E 가족의 노인은 원조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반면 자녀는 사적 원조로 교회 사람들의 조언을 요청하겠다고 하였다.

시나리오 3과 관련된 <표 6>의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견해를 살펴보면 학대로 인식하는 노인과 자녀세대는 모두 어머니의 재산권한을 침해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수발자의 부정적 행동이 판단 근거라고 하였다. 학대가 아니라고 보는 노인세대와 자녀세대는 모시고 있는 수발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전통적인 사고와 재산을 둘러싼 가족갈등이지 이러한 성격의 문제는 학대개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표 7>의 원조요청 태도에 있어서 일부 노인세대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요청하겠다고 하였고 자녀세대는 변호사외에 같은 종교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적 원조를 청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원조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노인세대와 자녀세대는 외부 도움없이 가족 내

〈표 6〉 잠재적인 경제적 착취에 대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인식 비교

상위범주	하위범주	구체적 내용	
		노인세대	자녀세대
학대	수발자의 부정적 행동	-부모건강보다 재산에만 관심 -재산갈등으로 어머니 마음을 불편하게 -부모를 모신다 해서 혼자 상속을 받아야 생각하는 것이 잘못 -어머니의 뜻에 역행함 -어머니 권한에 대한 침해	-어머니 마음을 불편케 하는 것 -어머니 권한에 대한 침해
비학대	수발자의 긍정적 행동	-부모를 모시는 것은 굉장한 희생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모시는 맏아들에게 권한이 있음	-모시고 있는 큰아들에게 주는 것이 당연
	수발대상자의 부정적 행동	-애초에 노인이 명의를 맏아들에게 해준 것이 문제임	
	가족갈등	-맏아들의 욕심으로 인한 재산상의 갈등일 뿐 -서로 의견이 다른 것일 뿐 -큰아들이 잘못하고 있지만 재산갈등 임	-장자가 부모를 책임졌던 과거의 전통의 영향으로 인한 재산분쟁 -재산과 관련해 서로 생각이 틀린 것뿐 -가족 내 문제일 뿐

에서만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외부도움을 요청하지 않겠지만 가족 내에서의 합의나 조정이 끝까지 안되는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외부 원조를 찾겠다는 견해로 양분되었다.

〈표 7〉 잠재적인 경제적 착취에 대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원조요청 태도 비교

상위범주	하위범주	구체적 내용	
		노인세대	자녀세대
원조요청	공적 원조	-변호사 선임	변호사선임
	사적 원조		교회 신자들의 조언
비요청	일체의 외부 도움 사절	-다시 조정을 시도해보나 외부도움은 청하지 않음 -외부도움은 소용없으며 노인만 가족내에서 구박덩이가 됨 -어머니와 맏아들이 합의를 시도해야 하나 외부도움은 사절 -집안내에서 의논해야지 외부도움은 안됨	-가족내에서 해결해야지 외부도움은 안됨
	최후수단으로나 외부 도움 요청	-가족내에서 합의를 시도하다 안되면 집안어른들과 상의하고 그래도 안되면 최후수단으로 변호사의 도움요청	-가족내에서 합의하고 최후방법으로 변호사 도움요청

4. 배우자 수발자의 잠재적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

치매증상이 심한 남편과 거의 말을 안하고 방문객이 있으면 문제행동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여 자녀나 남편친구들의 방문을 싫어하는 부인이 수발자인 네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60%의 가족이 세대간에 일치된 견해를 나타냈는데 A, B, D, H, I 가족은 학대가 아닌 것으로, J 가족만 학대로 판단하였다. 세대간에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나머지 가족들의 노인세대는 모두 이 상황이 수발대상자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반면 자녀세대는 학대로 간주하였다.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수발한 상황에 대해 노인세대는 거의 모두가 학대로 보지 않는 반면 자녀세대는 과반수가 학대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나리오 4와 관련 원조요청 태도는 G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가 모두 공적 원조를 청하겠다는 일치를 보이고 있다. C와 D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시설보호를 요청하겠다는데 일치를 보였고 C 가족은 노인은 시설보호를, 자녀는 재가보호서비스를 요청하겠다고 했고, D 가족은

〈표 8〉 배우자수발자의 잠재적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인식 비교

상위범주	하위범주	구체적 내용	
		노인세대	자녀세대
학대	수발자의 부정적 행동		-말도 안하고 방문도 싫어하는 것 -중증 치매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것 자체가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임 -친지들의 방문을 싫어하고 말을 안하는 것은 학대행위이며, 특히 말안하는 것이 그렇다
	상호작용 결과	-치매환자를 수발하다보면 수발자도 결국 병적인 성격이 된다	
비학대	수발자의 긍정적 행동	-어쨌든 돌봐주고 있으니까	
	수발대상자의 부정적 행동	-제 정신이 없으니까 -치매노인이 먼저 심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치매환자이므로 -심한 치매증상을 보이면 당할 재간이 없다	-본인이 의사결정도 못하는 상태인데 수발자 행동이 전혀 영향미칠게 없다
	수발상황에 따른 불가피성	-치매환자는 수발자가 특히 힘들다 -인지능력이 없는 환자를 돌보려면 어쩔 수 없다 -누구나 이렇게 된다 -오랫동안 간병을 하면 사람심리가 아무리 착한 사람도 못견딘다 -치매환자를 보살피다보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경우 어쩔 수 없다 -이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다

반대로 노인은 재가보호서비스를, 자녀는 시설보호를 선호하였다. G 가족은 노인은 원조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반면 자녀는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시나리오 4와 관련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인식을 살펴보면 <표 8>에 나타나듯 거의 모든 노인이 수발대상 노인의 치매행동과 치매노인을 수발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근거로 학대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 학대로 판단한 1명의 노인도 치매노인을 돌보다 병적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 자녀세대는 일부는 노인세대와 유사한 근거로 학대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였지만 적지 않은 수가 수발자의 부정적 행동에서 학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표 9>와 같이 원조요청 태도에 있어서 대부분의 노인세대와 자녀세대는 시설보호 혹은 재가보호서비스를 요청하겠다는 견해였으며 자녀세대 중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청하겠다는 사적 원조 요청이 있었다. 배우자수발자는 배우자로서의 도리가 있으므로 외부의 도움없이 가족보호를 계속해야 한다는 한 자녀세대의 의견은 수발자와 수발대상자 간의 관계 또한 원조요청 태도에 영향미칠 수 있는 측면임을 암시한다.

〈표 9〉 배우자수발자의 잠재적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원조요청 태도 비교

상위 범주	하위범주	구체적 내용	
		노인세대	자녀세대
원조요청	공적 원조	-치매전문너싱홈 -너싱홈 -재가보호서비스	-치매전문 너싱홈 -너싱홈 -재가보호서비스
	사적 원조		-자녀들의 관심 요청
비요청	문제해결불가능	-외부의 도움을 청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가족보호를 계속해야 한다	
	배우자의 의무		-배우자라면 힘들어도 수발해야 한다. 자녀하고는 입장이 다르다

5. 배우자수발자의 잠재적인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

시설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동이 불편한 부인을 수발하는 남편이 외출할 때면 부인이 무리하게 일어나 움직이다가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저귀를 채우고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천으로 묶어 놓고 방문을 잠그고 외출한다는 다섯 번째 시나리오에 관해 50%의 가족이 학대하는 것으로 세대간에 일치된 견해를 보였다. B, D, H, I, J 가족이 일치된 견해를 나타냈다. 세대간 차이를 보이는 나머지 가족들은 노인세대는 모두 학대가 아닌 것으로, 수발하는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조치로 잠재적인 신체적 학대에 관대하였으나 자녀세대는 전부 학대로 판단하였다. 일부 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넘어지거나 다른 사고가 있게

되고 그렇다고 수발자가 부인만 돌보고 있을 수도 없으니까 묶어놓는 것도 수용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수발의 편의성을 더 생각하고 묶인 노인의 감정에는 덜 관심을 보였다.

시나리오 5와 관련 원조요청 태도는 G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90%가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가 모두 원조요청을 하겠다는 일치를 보이고 있다. 원조요청을 하겠다는 가족가운데 A, B, C, D, E, H, I 가족이 공적 원조를 요청하겠다는데 세대간에 일치를 보이고 있는데 B, D, E 가족은 시설보호를 요청하겠다는데 일치를 보였고 C, H, I 가족은 노인은 시설보호를, 자녀는 재가보호서비스를 요청하겠다고 했고, A 가족은 반대로 노인은 재가보호서비스를, 자녀는 시설보호를 선호하였다. 한편 F 가족은 노인은 공적 원조로서 시설보호를 요청하겠다는 태도이

〈표 10〉 배우자수발자의 잠재적인 신체적 학대에 대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인식 비교

상위 범주	하위범주	구체적 내용	
		노인세대	자녀세대
학대	수발자의 부정적 행동	-다칠까봐 배려한다는 의도일지라도 신체를 묶어 구속하는 것 -각자 입장에서는 타당한 행동일 수 있으나 기저귀채워 침대에 묶어놓고 방문을 잠그는 것 -아무리 의도가 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신체적으로 속박하는 것 -배우자의 도리가 있는데 외출을 안하고 보살펴야 한다 -평생 함께 한 배우자인데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정하다	-부인을 보호하는 조치라 해도 묶고 외출하는 것은 어쨌든 학대이다 -묶어놓고 방문을 잠그는 것 -결과적으로 감금을 하는 거니까 학대이다
비학대	수발자의 긍정적 행동	-선의의 의도로 사고날까봐 그러는 것임 -위험을 막기 위해서 묶어놓을 수 있다 -일정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와 돌봐주니까	
	수발상황에 따른 불가피성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외출시에만 한정됨 -남편도 사람인데 나가서 볼 일도 봐야 됨 -사람이 볼 일이 있는데 매일 지키고 보살피는 것은 무리이다. 돌보는 사람도 바람쏘일 필요가 있다. -외출안할 수는 없다	

나 자녀는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적 원조를 선호했다. J 가족은 반대로 노인은 자녀들의 도움 같은 사적 원조를 선호한 반면 자녀는 공적 원조인 시설보호를 원했다. G 가족의 노인은 원조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태도인 반면 자녀는 요청하고자 했다.

시나리오 5와 관련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견해를 살펴보면 <표 10>에 나타나듯 학대로 인식하는 노인과 자녀세대는 모두 수발자의 부정적 행동에서 학대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아무리 선의의 의도를 가졌다해도 신체적 속박까지 하는 것은 학대이며 특히 배우자수발자이므로 더 정성을 기울인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는 기대를 말하고 있다. 학대가 아니라고 보는 노인세대와 자녀세대는 선의의 의도를 가진 행동이라는 점과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어쩔 수가 없다는 수발상황에 따른 불가피성을 주로 이야기하면서 학대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표 11>과 같이 원조요청 태도에 있어서 대부분의 노인세대와 자녀세대는 시설보호와 재가보호서비스를 요청하겠다는 견해를 가졌고 소수나마 자녀 혹은 가족의 도움을 구하겠다는 사적 원조 요청도 있었다. 노인세대 중 일부는 돌보는 대상이 배우자인 경우 가족보호를 원하는 노인의 소망을 고려해 외부 도움을 찾지 않겠다고 하였다.

〈표 11〉 배우자수발자의 잠재적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원조 요청 태도 비교

상위범주	하위범주	구체적 내용	
		노인세대	자녀세대
원조요청	공적 원조	-너싱홈 -재가보호서비스	-너싱홈 -재가보호서비스
	사적 원조	-자녀에게 도움 요청	-가족들한테 도움 요청
비요청	수발대상자의 소망	-가족수발 유지 -도저히 안될 때까지 가족이 돌봐야 한다	

6. 전체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의 집단 비교

<표 12>에서 노인과 수발자간의 갈등과 충돌이 있는 상황을 담고 있는 5개의 가상적 시나리오들에 대한 전체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인식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노인세대가 학대에 덜 민감하거나 관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배우자 수발자에 관한 시나리오 4는 거의 모든 노인들이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고, 외출시 수발대상 노인에게 신체적 속박을 시킨 시나리오 5는 자녀세대는 전부 학대로 판단한 반면 노인세대는 과반수만이 학대로 보고 있다.

〈표 12〉 5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학대에 관한 인식

시나리오	노인세대(학대/방치로 인식)	자녀세대(학대/방치로 인식)
1	30%	40%
2	40	70
3	40	60
4	10	50
5	50	100

<표 13>에서 원조요청과 관련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인식을 살펴보면 모두 대체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잠재적인 경제적 착취상황에 대해서는 노인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다른 상황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원조요청이 덜 적극적이었고 특히 원조를 요청하겠다는 비율에서 자녀세대가 더 낮았다. 노

〈표 13〉 5개의 시나리오에 대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원조요청 태도

시나리오	노인세대			자녀세대		
	원조요청	공적 원조	사적 원조	원조요청	공적 원조	사적 원조
1	100%	100%	0%	100%	90%	10%
2	80	100	0	80	87.5	12.5
3	50	100	0	30	66.7	33.3
4	90	100	0	90	88.9	11.1
5	80	87.5	12.5	100	90	10

인세대는 거의 전적으로 공적 원조를 요청하겠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고 자녀세대는 낮은 비율이지만 모든 시나리오 상황에서 사적 원조를 요청하겠다는 태도가 있다.

한편 시나리오 1, 2, 3, 4, 5에서 학대여부와 원조요청 여부에 관한 반응을 5개의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로 간주해서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평균 점수를 Mann-Whitney test를 통해 비교한 결과 <표 14>에서 드러나듯 노인세대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노인학대에 대해 관대한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원조요청 태도에 있어서는 노인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적극적인 원조요청 태도를 지녔고 세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인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수발상황의 잠재적 노인학대 문제에 더 관대하고 노인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거의 전적으로 공적 원조를 요청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재미한인들의 가족수발에 관한 인식의 현실을 대변한다. 한인 이민 노인들과 그들의 성인자녀들은 효에 관한 유교적 전통이 가족관계를 지배하는 사회적 규범이 있는 한국에서 성장하고 출생했을지라도, 미국에서의 가족관계에 있어서 한국적인 효에 대한 기대는 양측 모두 기대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세대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기능손상된 노인을 보살피는 일이 돌보는 가족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간주해 다소간의 부당한 처우가 있어도 이를 수발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불가피한 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적극적인 공적 원조 요청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미국정부의 저소득노인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의료보호, 주거보조금, 재가보호서비스 등의 제공으로 이러한 지원이 가족에 의존하기 보다 공적 원조의 요청을 선택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14〉 노인학대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의 세대간 차이

구 분	집단	평균순위	순위총합	Mann-Whitney U	Z	p
노인학대인식	노인세대	7.80	78.00	23.00	-2.101	.043
	자녀세대	13.20	132.00			
원조요청태도	노인세대	10.20	102.00	47.00	-.251	.853
	자녀세대	10.80	108.00			

* 각 시나리오를 학대로 판단하였으면 2, 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으면 0, 잘 모르겠다면 1로 점수를 주고 5개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을 합산하였다. 각 시나리오에서 원조를 요청하겠다면 2, 요청하지 않겠다면 0, 잘 모르겠다면 1로 점수를 주고 5개 시나리오에대한 응답을 합산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재미 한인 가족 내의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수발상황에서의 노인과 수발자 간의 갈등 및 충돌에 대한 인식을 내용분석한 결과 각 시나리오 상황에서 40-70%가 세대간의 견해가 불일치할 정도로 세대간 견해차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가족 내 노인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잠재적 학대에 대해 훨씬 덜 민감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인세대와 자녀세대간의 집단 비교결과에서도 노인세대가 잠재적인 노인학대에 대해 훨씬 덜 민감하거나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조요청 태도에 있어서는 가족 내 세대간에 차이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노인세대와 자녀세대의 집단비교에서도 유의미한 차이 없이 경제적 착취를 제외한 모든 잠재적인 학대 상황들에서 적극적으로 공적 원조를 활용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노인학대에 대한 한인 노인들의 관대한 인식 측면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되나 적극적인 공적 원조 요청 의사는 오히려 선행연구들과 상반되는, 새로운 발견이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로스엔젤리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가족 내 노인과 자녀세대로 이 지역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의 적극적인 공적 원조 이용의사는 이를 반영한다고 본다. 한편 한인노인들과 자녀세대들이 요청하겠다는 공적 원조에 노인학대 상담전화(ELDER ABUSE HOTLINE) 혹은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 등과 같은 노인학대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나 서비스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가족수발의 대체 혹은 보완 서비스 위주의 원조요청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본 연구결과의 재미한인 사회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발상황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가족 내의 노인과 자녀세대간에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고 또한 노인과 자녀들의 견해가 실천가의 노인학대 정의 및 적절한 개입방법에 관한 판단과 차이가 크다면 이는 노인과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가족이 적절하게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데 있어서 해소되어야 할 중요한 장벽이 될 것이다. 둘째, 한인노인들과 성인자녀들이 수발상황에서의 잠재적 노인학대에 관대하다고 해서 이를 문화적인 특성으로만 간주한 채 고위험 상황에 처한 노인문제가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노인학대가 무엇인지와 가능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포함하여 노인학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천가들은 노인학대의 개념화에서 클라이언트의 문화적 관점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인 노인집단이나 자녀집단이 수발상황 속의 특정한 행동을 학대가 아니라고 보는 관점을 받아들여 한국적인 문화 맥락 내에서 이 행동은 학대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는가 혹은 보다 보편적인 입장을 취해서 어느 집단이 어떤 식으로 보건 간에 이런 행동은 학대라고 판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일반적으로 한인 노인들이 수발을 받는 처지에 놓인 것을 자책하기 때문에 수발상황의 노인학대에 관대하고 이를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에 실천가들은 민감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부분의 가족수발자들은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의존성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수발상황에 놓이게 된다. 의존성이 높은 노인을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부족은 수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인학대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가족수발자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의 의존성의 특성과 자신의 수발능력에 대한 현실적 이해,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확대가 시급하다.

참고문헌

이선이 (1998),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성희 · 한은주 (1998),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 요인," 《한국노년학》 18(3): 123-141.

조애저 · 김승권 · 김유경 (1999),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해경 (1993),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22: 273-286.

Anetzberger, G. J., Korbin, J. E., & S. K. Tomita (1996), "Defining Elder Mistreatment in Four Ethnic Groups across Two Generations,"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1: 187-212.

Bergeron, L. R. (2001), "An Elder Abuse Case Study: Caregiver Stress or

Domestic Violence? You Decide,"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4(4): 47-63.

Berman, J. (1994), "Maladaptive Networks: Elder Abuse Victim's Experience with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MI.

Blakely, B. E. & D. C. Morris (1992), "Public Perceptions of and Responses to Elder Mistreatment in Middletown,"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4: 19-37.

Carp, F. M. (2000), *Elder Abuse in the Family: An Interdisciplinary Model for Research*, Springer Publishing Company.

Costa, A. J. (1993), "Elder Abuse: Primary Care between Dementia and Elder Abus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0: 643-646.

Harbison, J. & M. Morrow (1998), "Re-examining the Social Construction of Elder Abuse and Neglect: A Canadian Perspective," *Aging and Society* 18: 691-711.

Hudson, M., Beasley, C., Benedict, R., Carlson, J., Craig, B., & S. Mason (1999), "Elder Abuse: Some African American View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9): 915-939.

Kingston, P. & Penhale, B. (eds.) (1995), *Family Violence and the Caring Professions*, Macmillan Press.

Korbin, J., Anetzberger, G., & J. Eckert (1989), "Edler Abuse and Child Abuse: A Consideration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Intergenerational Family Violence,"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4): 1-14.

Kosberg, J. T. (1988), "Preventing Elder Abuse: Identification of High Risk Factors Prior to Placement Decisions," *The Gerontologist* 28: 43-50.

Lachs, M. S., & K. Pillemer (1995), "Abuse and Neglect of Elderly Person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2: 437-443.

Lachs, M., S., Williams, C. S., O'Brien, S., Hurst, L., & R. Horwitz (1997), "Risk Factors for Reported Elder Abuse and Neglect: A Nine-year Observational Cohort Study," *The Gerontologist* 37: 469-474.

Meshefedjian, G., McCusker, J., Bellavance, F., & M. Baumgarten (1998), "Factors Associated with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Informal

Caregivers of Demented Elders in the Community," *The Gerontologist* 38: 247-253.

Moon, A. & D. Benton (2000), "Tolerance of Elder Abuse and Attitudes toward Third-party Intervention among African American, Korean American, and White Elderly," *Journal of Multicultural Social Work* 8(3/4): 283-303.

Moon, A., Tomita, S. K., & S. Jung-Kamei (2001), "Elder Mistreatment among Four Asian American Groups: An Exploratory Study on Tolerance, Victim Blaming and Attitudes toward Third-party Interventio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36(1/2): 153-169.

Moon, A. & O. Williams (1993),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Help-seeking Patterns among African-American, Caucasian American, and Korean-American Elderly Women," *The Gerontologist* 33: 386-395.

Nadien, M. B. (1995), "Elder Violence(maltreatment) in Domestic Settings: Some Theory and Research," in L. L. Adler & F. L. Denmark (eds.), *Violence and Prevention of Violence*, Westport, CT: Praeger.

Ogg, J., & C. Munn-Giddings (1993), "Researching Elder Abuse," *Aging and Society* 13: 389-413.

Pablo, S., & K. L. Braun (1997), "Perceptions of Elder Abuse and Neglect and Help-seeking Patterns Among Filipino and Korean Elderly Women in Honolulu,"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9(2): 63-76.

Pillemer, K. A. (1986), "Risk Factors in Elder Abuse: Results for a Case-control Study," in K. A. Pillemer & R. Wolf (eds.), *Elder Abuse: Conflicts in the Family*, MA: Auburn House.

Pillemer, K. A., & D. Finkelhor (1988),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 Random Sample Survey," *The Gerontologist* 28: 51-57.

Pillemer, K. A., & J. J. Suitor (1992), "Violence and Violent Feelings: What Causes Them among Family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47(4): 165-172.

Sengstock, M. C. (1991), "Sex and Gender Implications in Cases of Elder Abuse," *Journal of Women and Aging* 3: 25-43.

Sengstock, M. C. & Hwalek, M. (1986), "A Critical Analysis for the Identification of Physical Abuse and Neglect of the Elderly," *Home*

Health Care Services Quarterly 6(4): 27-37.

Weber, R. P. (1990), *Basic Content Analysis*, Thousand Oaks, CA: Sage.

Wolf, R. & K. A. Pillemer (1989), *Helping Elderly Victims: The Reality of Elder Abus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